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가합5504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2022나201164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가합550454 판결

전문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김대영, 장은민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술

담당변호사 신현준

변론종결 2021. 12. 22.

판결선고 2022. 1. 2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2017. 6.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 31.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기관이고, 원고는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4762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 위 법원 2015차전4197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합계 92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08245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225억 원 상당의 보증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C은 2017. 6. 15.경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자신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있는 피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회원권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7. 12.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17721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 하여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위 압류가 실행되지 못한 것을 알았으므로, 2017. 12. 6.경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인 1년을 경과한 2021. 7. 13.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압류명령 이후 2018. 9. 20.경 D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았으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양수인'란에 피고의 상호가 삭제되어 있어 C이 누구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매도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원고 담당직원은 2021. 4. 29.경 비로소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C이 피고의 대표자임을 확인하여 C이 이 사건 회원권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무렵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압류명령 이후 D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은 2018. 9. 20.경 무렵에는 C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회원권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C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7. 13. 제기되어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C에 대하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4762 사건의 2013. 11. 26.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2,41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 위 법원 2015차전4197 사건의 2015. 6. 12.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300,934,2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가단5208245 확정판결에 기한 22,5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44,287,192,2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지급명령 및 판결 확정 이후 C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위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명령 이전부터 C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

② C은 2017. 6. 15.경 C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있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회원권을 매매대금 129,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7. 12.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17721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D로 하여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이 사건 압류명령을 받았으며, 이 사건 압류명령이 2017. 12. 11.경 D에게 도달되었고, D은 2018. 9.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수령한 무렵 원고는 무자력인 C이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양수인’란에는 피고의 상호가 지워져 있었으나, “(주)”라는 기재는 남아 있었고, 피고의 상호가 기재된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으며, 피고의 주소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당시 C이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기업정보 종합포털(F 주식회사의 G)에 “C” 또는 “H”를 검색하면 2015. 6. 5. 설립된 피고의 상호(상호는 2016. 4.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와 2016. 4. 26.부터 사내이사로 취임한 C이 피고의 대표자라는 사실도 쉽게 알 수 있었다.

④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확인한 2018. 9. 20.경으로부터 2년 7개월이 경과한 2021. 4. 29.경에서야 C이 이 사건 회원권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진표, 판사 김주현, 판사 구하경

[별지]

골프회원권

골프장명칭 : 컨트리클럽

회원권번호 : . 끝.

